

[공 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5-886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재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명칭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적용근거를 명확히 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동호인 각종 대회 등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자금지원 등 생활체육 진흥 및 기반조성사업을 위해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조례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22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22일까지로 연장(안 제2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참조: 체육진흥과,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전화: 2127-5609, FAX: 3299-2570, E-mail: dahliahw@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붙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 -
----------	--------

제출연월일 : 2025.6. .

제 출 자 : 체육진흥과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동호인 각종 대회 등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자금지원 등 생활체육 진흥 및 기반조성사업을 위해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조례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22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조례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22일까지로 연장(안 제2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 「경륜·경정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사항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25. 7. ~ 7. (총 20일간)

라. 첨부자료

-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2) 관계법규 발췌문 1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본문 중 “2025년 12월 22일”을 “2030년 12월 22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 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22일로 까지 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 2030년 12월 22일 -----. ----- ----- -----.

관계법규 발췌문

□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수익금의 사용)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가.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100분의 62.5

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出捐)에 100분의 10

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0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2

나.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9.5

다.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에의 지원에 100분의 10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

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24.5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의견서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의견제출 내용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